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가합53177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도기영, 안형윤

피고1. A

2. 주식회사 B

변론 종결2020. 10. 28.

판결 선고2020. 11. 18.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3,595,709원 및 그 중 293,166,498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2020. 6. 20.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가.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9. 5.경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A에게 특허청 2019. 5. 28. 접수 C로 마친 권리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상표서비스표권에 관하여,
가.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9. 5.경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A에게 특허청 2019. 5. 28. 접수 D로 마친 권리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8.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 198,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27.로 정한 신용보증약정과 보증원금 95,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27.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A는 2017. 4. 28.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E은행에 제출하고서 3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2019. 12. 31.경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3. 27. E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94,305,568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보증인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20. 3. 27.부터 현재까지 위 약정내용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율'은 연 10%이다.

라.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은 428,900원이고, 그 대위변제일인 2020. 3. 27.부터 피고 A가 원고에게 구상금 일부인 1,139,070원을 상환한 날까지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311원이다.

마. 피고 A는 2019. 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실용신안권 및 상표서비스표권(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2019. 5. 28. 피고 회사에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특허청 C로, 그 상표서비스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D로 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절차(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권리이전등록'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본 계약에 의해 기존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진 피고 A의 모든 채무는 소멸된다.
- 피고 A는 F에게 피고 A가 운영하는 사이트 및 권리 일체(특허) 등을 이전하며, 비용은 2,000만원으로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법적 절차비용 및 확정된 지연손해금 합계액 293,595,709원(= 294,305,568 - 1,139,070 + 428,900 + 311)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구상금 293,166,498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20. 3.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6. 20.까지는 약정손해금 비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와 피고 A 간에 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A가

운영하던 개인기업인 G를 2019. 8. 10.경 폐업하는 등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일 무렵 피고 A의 재무상태가 매우 나빴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스스로도 G가 폐업할 예정임을 알고서 향후 자신의 케익회사 창업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을 양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원고가 2020. 3. 27.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A의 무자력

갑 제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 이외에 특별히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E은행에 대한 합계 53,300,000원의 대출금채무, H조합에 대한 99,600,000원의 대출금채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회사는 그 대표이사 F이 2017. 4.부터 2017. 7.까지 G의 배송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A에 대하여 약 2개월 간의 임금 합계 4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 A와 F은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약 2,400여만 원(= 현금 2,000만 원 + 체불임금 400여만 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A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그 대표이사 F이 피고 A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터에 피고 A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금채권과 양도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양도대금 2,000만 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였는바, 그 양도대금은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정당한 양도계약이 성립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도하면서 그 채권자와 사이에서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수익자인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매도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매도행위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다52917 판결 등 참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경위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는 피고 A의 재무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적정한 양도대금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은 피고 A가 G의 운영에 필요한 사이트 및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는 것으로 피고 A가 G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G의 경영난을 짐작케 한다.

② G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 스스로도 G가 폐업할 예정임을 알고서 향후 자신의 케익회사 창업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 사건 각 지식재산권을 양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G의 경영 악화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A의 배우자인 I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기도 하는 등 피고 A와 F이 상당한 정도의 긴밀한 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 A와 피고 회사 간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병철

판사정기상

판사선승혜

별지